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정 2000. 10. 1. 개정 2001. 9. 1.
 개정 2002. 1. 1. 개정 2004. 11. 1.
 개정 2006. 11. 1. 개정 2010. 12. 24.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6. 4. 20.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평가영역,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이 규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 부가영역의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영역별 평가배점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한다. <개정 2017.3.1.>

1. 교육영역(배점 400점) : 교육의 제반활동 <개정 2017.3.1.>
2. 연구영역(배점 100점) : 전공과 관련된 모든 연구 및 창작활동
3. 봉사영역(배점 20점) :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봉사활동
4. 산학협력영역(배점 400점) : 산학협력 관련 연구, 봉사, 취업률 제고활동 등 산학협력형태의 제반활동 <개정 2017.3.1.>
5. 삭제 <2017.3.1.>
6. 부가영역(배점 80점) : 1 - 5호 이외에 모든 활동

제 2 장 심의기구

제4조(심의기구) ① 교원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학부(과) 및 계열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② 교원업적평가 심사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③ 그 외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업적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원업적평가결과의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
4. 교원업적자료의 심사·적용·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원업적우수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원업적평가에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는 매년도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업적평가

제7조(업적평가 주기) 업적평가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업적평정 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 1학기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8월 31일까지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평가자료 제출) ① 교원업적평가 대상교원은 교원업적평가 심의요청서와 업적증빙자료를 평가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교원업적평가에 필요한 행정부서의 자료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 당해 연도 11월 첫째 주까지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절차) ① 평가는 위원회의 심사와 인정을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확정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업적인정의 제한) ① 업적평가 시 세부평가 항목 실적을 중복 인정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② 평가 실적자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

- 제11조(업적평가 예외 인정)** ① 평가 당해 연도 신규 임용자, 6개월 이상 출장, 연수, 파견,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기간 중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병가나 출산휴가, 공무에 의한 출장, 연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중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③ 학과의 신설,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④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통폐합 및 폐지 등의 학사구조 개편 계획에 따른 행정부서 특정 업무를 겸직 부여받은 교원에 대한 평가는 소속 부서장의 평가결과에 따른다.

- 제12조(업적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재심)** ① 교원업적평가 주관부서인 교학처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해당교원이 개별통보를 받은 후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대상 교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재심의신청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시 경우에 따라 해당 교원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재심의결과를 재심의신청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업적평가 결과 활용)** ① 위원장은 매년 교원업적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경우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 ② 총장은 교원업적평가결과를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 연봉 책정에 반영 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함에 따라 매년 우수 교원 및 학부/학과를 선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포상계획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평가영역별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학부/학과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보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장은 평가 결과에 있어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의 항목과 기준) 교원업적평가 항목별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주관부서) ①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한 총괄업무는 교학처 교무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 3 장 영역 및 종합등급의 판정

제16조(세부영역별 평가등급 판정 및 활용) 세부영역별 평가등급의 판정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그 판정결과의 활용은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인센티브 지급 및 연봉책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1.>

구분	배점	취득점수	영역등급	비고
교육영역	400	360점 이상	A	90% 이상
		320점 이상 ~ 360점 미만	B	80% 이상
		280점 이상 ~ 320점 미만	C	70% 이상
		240점 이상 ~ 280점 미만	D	60% 이상
		240점 미만	E	60% 미만
봉사영역	20점	16점 이상	A	80% 이상
		12점 이상 ~ 16점 미만	B	80% 이상
		8점 이상 ~ 12점 미만	C	70% 이상
		4점 이상 ~ 8점 미만	D	60% 이상
		4점 미만	E	50% 이상
연구영역	100점	90점 이상	A	90%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B	80% 이상
		70점 이상 ~ 80점 미만	C	70% 이상
		60점 이상 ~ 70점 미만	D	60% 이상
		60점 미만	E	60% 미만
산학협력영역	400점	360점 이상	A	90% 이상
		320점 이상 ~ 360점 미만	B	80% 이상
		280점 이상 ~ 320점 미만	C	70% 이상
		240점 이상 ~ 280점 미만	D	60% 이상
		240점 미만	E	60% 미만
부가영역	80점	72점 이상	A	90% 이상
		64점 이상 ~ 72점 미만	B	80% 이상
		56점 이상 ~ 64점 미만	C	70% 이상
		48점 이상 ~ 56점 미만	D	60% 이상
		48점 미만	E	60% 미만

- ① 안식년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가 불가 할 경우 교원직급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 ②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각 영역별 점수의 합을 계약기간(년)으로 나눈 평균점수로 판정하며,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중 2개 이상이 E등급 이하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건부로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 3.1.>

제18조(종합평가 등급판정 및 활용) 종합평가 등급의 판정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그 판정결과와 활용은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인센티브 지급 및 연봉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최근 3년간 취득한 종합점수의 평균점수로 판정하며, 종합평가 등급이 F등급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임용을 제외한다. 단, 교원의 직급이 정교수이면서 정년이 보장된 교원일 경우 그 결과는 연봉조정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등급	점수	비고
A	900점 이상	배점의 90% 이상
B	800점 이상 ~ 900점 미만	배점의 80% 이상
C	700점 이상 ~ 800점 미만	배점의 70% 이상
D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배점의 60% 이상
E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배점의 50% 이상
F	500점 미만	배점의 50% 미만

제 4 장 보 칙

제 16 조 (시행세칙) ①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